

해외건설협회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간 해외사업 개발 및 민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

해외건설협회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(이하 ‘양 기관’이라 한다)은 해외 도시개발 사업 개발 및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양 기관의 공동 이익 추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협약목적) 이 업무협약(이하 ‘협약’이라 한다)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외 도시개발사업 개발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우리 기업 및 유관 기관의 해외 도시개발사업 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협력내용)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한다.

1. 해외 도시개발사업 개발 · 지원을 위한 현지 정책 · 제도 및 정보 공유
2. 해외 도시개발사업 사업성 분석(F/S, MP 등)을 위한 상호 협력 및 공동 수행
3. 국내 기업의 해외건설시장 진출 지원
4. 기관 간 상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류 및 업무 노하우 공유
5. 양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· 연수와 관련한 정보 교환 및 지원
6. 기타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3조 (비밀유지) 양 기관은 상호 서면동의 없이는 본 협약과 관련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4조 (효력 및 유효기간) ① 이 협약은 양 기관의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② 협약의 유효기간은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, 유효기간 종료일에 자동 종료된다.

③ 본 협약의 필요성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기 종료할 수 있으며,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대측에 6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상호 협의하여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.

제5조 (운영세칙) 본 협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협력사항의 추가 및 세부 주진 방법에 대해서는 본 협약을 근거로 상호간에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제6조(신의성실의 의무) 협약 기관은 본 협약서에 합의된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력하며 긴밀히 협조한다.

2022년 4월 7일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,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2년 4월 7일

 해외건설협회
회장 박선호

 ifez 인천경제자유구역청
청장 이원재

박선호

이원재